



## 기술분쟁의 새로운 해결사! 특허심판원 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

- 올해 조정 회부된 특허심판사건 100% 조정 성립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를 본격 추진한 결과, 금년에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, 해당 사건 모두가 조정 성립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.

**조정:** 대체적 분쟁해결(ADR,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 수단 중 하나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으로, 조정 성립 시,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

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는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사건을 당사자 동의 하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,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, 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.

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, 민·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. 올해 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를 통해 회부된 사건들이 모두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된 것은 사건을 맡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로 풀이된다.

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,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회복하고, 납품계약,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, 합리적인 특허분쟁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다.

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“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이었기에 조정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,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의 도움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
서울수 특허심판원장은 “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,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”며, “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-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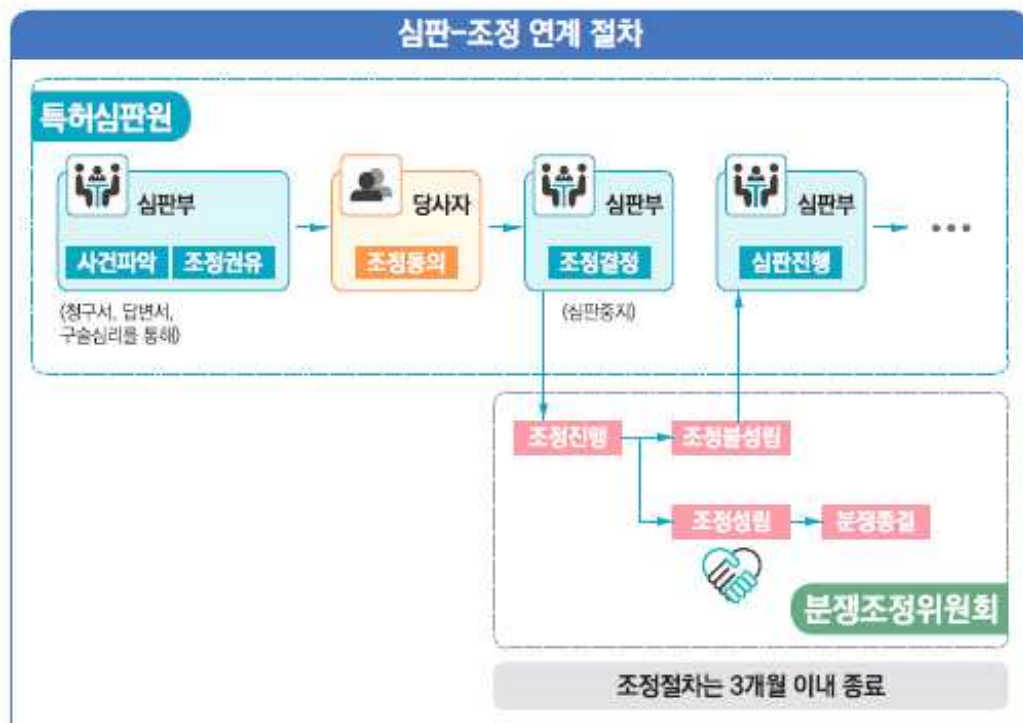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특허심판원<br>심판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진욱 (042-481-5879) |
|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주영 (042-481-8444) |



## 심판-조정연계 제도란?



- 심판장이 심판사건 진행 중 심판보다 '조정'에 의한 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며,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(=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)을 가지게 됩니다.



## 심판-조정연계 제도의 장점



- ① 조정비용은 무료이고, 절차가 간편하여 활용이 용이합니다.
- ② 짧은 조정기간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.
  - \*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,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(최장 6개월)
- ③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
- ④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

## 심판-조정연계 제도 절차도

